

감염병 예방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교내 적용사항

1 추진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예방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2 학교 및 생활 방역수칙

구분	세부내용
마스크 착용 권고	*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특히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강의실,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른 감염 위험도 상승으로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 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행사·체형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발열 검사	* 일일 1회 이상 실시
환기	*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 냉·난방기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량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대학 행사	*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3 환경위생관리

강의실 및 교직원 업무 공간	* 강의실 등의 창문은 원칙적으로 상시 개방 - 다만, 기상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을 수시(쉬는시간 마다) 개방하거나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충분히 환기 실시 - 창문을 이용한 환기시에는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수시로 환기 실시(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하며 자연환기 시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맞통풍이 되도록 할 것) ※ 기본방향 :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해야 하며 만약 휴지를 사용했다면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 * 1일 1회 이상 강의실 등 빈번한 접촉이 있는 경우 자주 소독 실시
-----------------	---

4 학교 대응 요령

상 황	세부 내용
등교(출근) 전 유증상	* 등교(출근) 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검사 실시(권고)
등교(출근) 시 유증상	*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검사 안내 필요시 자가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 실시
확진자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확진되면 → 해당 학과(부서) 보고, 「방역기관 문자 통보 내역」(격리기간기재 有) 캡처본 제출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 확진자 발생 동선에 따른 시설 방역 신청(관재팀) * 확진 확인 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서 작성→보건실 제출
동거인 확진 시	*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음성 시 6~7일차에 신속 항원검사 1회(권고))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소독 및 환기	*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창문을 동시에 열어 환기

5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❶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❷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❸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❹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❺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❻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구분	방역당국 통보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본인”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권고 기간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참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9제 7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우리 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함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현장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합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 발생 개요

구분	소속	학번	성명/성별	생년	격리기간	감염경로	교내동선	핸드폰
재학생 교직원	00학과 1학년, 총무팀	202201001	김OO/여	96	22.8.25~8.31	확진자접촉 증상발현	OO관 201호	

□ 조치 및 기타사항

-
-